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발의일자 : 2020. 11. 13.
- 발 의 자 : 서 구 청 장
- 검토일자 : 2020. 11. 18.

2. 근거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제85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, 제95조

3. 주요내용

-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안)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

4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,
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